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
------------	-----

제출년월일 : 2000.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개정이유

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헌행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는 “청소년단체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제16조제2항에서 “청소년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고 중복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 함.(안 제16조제2항)
- 나. 야영장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 다. 관리수탁자의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17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 나. 입법예고결과 1부.

##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야영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축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7조 및 농업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 야영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p> <p>③ 야영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16조(위탁관리) ①-----</p> <p>-----</p> <p>-----</p> <p>② &lt;삭 제&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제17조(관리수탁자의 업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그 관리권이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17조(준용규정) 야영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대량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휘 손, 망설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 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영주식에 부상양여 하여야 한다.</p>	
<p>⑤ 관리수탁자는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⑥ 관리수탁자가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p>	

## 관 련 법령(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 ⑦호 <생·약>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약>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약>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위탁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삭제 <99. 8. 7>
  -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운영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4(소규모 수련시설의 운영위탁)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 입법예고결과

- 조례명 : 영주시청 소년야영장 운영 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09호(1999. 12. 13.)에 게재
- 예고기간 : 1999. 12. 13. ~ 2000. 1. 3.(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